

【전자계약대상】

해남군공고 제2026-1947호

| 입찰방식              | 지역제한 | 등록·면허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동<br>계약 | 낙찰자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고기간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소액(총액)<br>수의      | 해남군  | 석분<br>(1111169301)<br>물품 등록 업체 | 단독<br>이행 | 낙찰하한율(88%)<br>이상 견적서 제출자 중<br>최저가격으로<br>제출한 자 | 3일<br>(공휴일,<br>토요일<br>제외) |
| 추정가격 1억원 이하<br>물품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

### ※ 주 의 사 항 ※

- 반드시 해당 물품 시장조사 후 계약 이행 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해야 합니다.
- 계약이행 불가한 낮은 투찰금액을 사유로 낙찰 포기 시(낙찰자 증빙서류 미제출 등 포함) 수의계약 배제 대상입니다.
- 낙찰대상자로 안내(통보)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자 증빙서류를 계약부서인 해남군 재무과 계약팀(FAX : 530-5581)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낙찰대상에서 자동제외 합니다.**

### 1.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사 업 명: 옥천, 계곡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(1차분)(석분)
- 나. 기초금액: 금22,044,000원(추정가격 20,040,000원, 부가가치세 2,004,000원)
- 다. 물품내역: 석분 668m³ \* 내역서 참조
- 라. 납품장소: 해남군 지정장소
- 마. 인도조건: 현장도착도
- 바. 사업내용: 내역서 참조
- 사. 납품기한: 계약일로부터 2027. 2. 13.까지
- 아. 입찰 및 계약방법: 전자계약, 소액(총액)수의 견적입찰, 제한경쟁

※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,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.

### 2. 견적 제출 및 개찰일시

- 가. 견적서 제출 : 2026. 8. 20.(목) 09:00 ~ 2026. 8. 25.(화) 10:00
- 나. 개 찰 일 시 : 2026. 8. 25.(화) 11:00
- 다. 개 찰 장 소 : 해남군 입찰집행관 PC

※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# 3. 견적제출 참가자격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,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.

- 1)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일[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)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.]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,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제출일)까지 주된 영업소가 **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내에 소재한 업체**
- 2)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 입찰참가자등록 마감일시까지 **석분(1111169301)을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**한 업체
- 3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**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**(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)를 **소지**한 업체

※ <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>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(<http://www.smpp.go.kr/>)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.

나. 공동수급체: 불가

다.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,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### 4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

가. 예정가격은 행정자치부예규에 기초금액 기준으로  $\pm 3\%$ 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천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.

나.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」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**낙찰하한율(88%)** 이상인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됩니다.

※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됩니다.

다.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**자동 추천 방식**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.

## 5. 견적 제출 및 참가방법

- 가. 본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- 나.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(<http://www.G2b.go.kr>)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- 다.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라.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(국가종합전자조달)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.

## 6. 견적제출 보증금 및 국고귀속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.
- 나. 입찰보증금의 해납금 세입조치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.

## 7. 견적제출 무효

- 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 제4항,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조달청 전자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.
- 나.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,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.

## 8. 청렴계약이행 준수

- 가.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“청렴계약 이행 서약서”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나.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## 9.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 확인

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‘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’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(붙임2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(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) 및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(수의계약체결제한)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 체결 불가

## 10.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

- 가. 본 건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,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「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」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나.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·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
### 《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(제4조, 제9조)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## 11. 기타사항

- 가.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물품구매(제조)입찰유의서,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, 전자입찰이용자약관, 전자입찰사용안내서,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나. 전자입찰 진행 및 낙찰 결과 조회는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 홈페이지(<https://www.g2b.go.kr>)」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- 다.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견적 등록 및 장애발생에 따른 투찰이 곤란한 경우 등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  
(문의 :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☎1588-0800)
- 라.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.
- 마. 기타 문의사항
- 입찰 및 계약: 재무과 계약팀(☎ 061-530-5277)
  - 물품 공급: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팀(☎ 061-531-3658)

2026. 8. 19.

해 남 군 (분 임) 재 무 관

## 수의계약 배제사유

-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·파산·해산·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,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
-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, 담합행위, 입찰·계약 서류의 허위·위조 제출, 입찰·낙찰·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(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)
-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
  - ※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「낙찰자결정기준」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“4”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, 제2장의2 기술·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<별표>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. 이때 ‘입찰공고일’은 ‘안내공고일’로 ‘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’은 ‘견적서 제출마감일’로 본다.
-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·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,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, 불법하도급,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-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
  - ※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.
-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
  1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(법인은 대표자)
  2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(배우자 포함)의 직계 존·비속인 사업자
  3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%이상을 소유한 자
  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(배우자, 직계존·비속)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%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
  5.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
-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
-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
- ⑩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(용역)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(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) 이상인 자. 다만,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 
(단, 제3절의 “1”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)

[붙임 2]

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[별지 제10호 서식]

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

• 해당하는 [ ]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1쪽)

|     |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주자 | 발주기관    | 발주부서 | 발주날짜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발주내용    |      | [ ] 공사 [ ] 용역<br>[ ] 물품 [ ] 기타 |
|     | 수의계약 사유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계약상대자<br>(확인인) | 성명  | 소속 | [ ] 개인 [ ] 법인<br>[ ] 단체 [ ] 기타 |
|                | 연락처 | 주소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

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|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② | 계약 업무를 법령상·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③ | 발주기관(산하기관)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④ | 발주기관(자회사)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, 배우자,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⑤ |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, 배우자, 국회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⑥ |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, 배우자, 의원의 직계존속·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⑦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| ⑧ |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(공직자, 배우자, 공직자의 직계존속·비속,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·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,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)에 해당하는가? | [ ] 예 [ ] 아니오<br>[ ] 해당없음 |

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|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해남군재무관 귀하 | 계약상대자(확인인) | 년 월 일 | (서명 또는 인)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